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3. 7. . (제204회)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 출 자	이영희의원 외 6명
제출 연월일	2013. 7. .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이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3. 7. .

발 의 자 : 이영희,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김재구, 성목용, 이달호

1.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등 (안 제1장 총칙)
-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안 제2장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등)
- 정책결정과정 및 군정참여 등 (안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안 제4장 여성정책위원회)
-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등 (안 제5장 여성발전기금)

3. 제 정 안 : 붙 임

4. 참고자료

- 상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정책”이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결혼이주여성”이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여성발전종합계획 등을 기초로 고령군의 여성발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분리 통계) 군수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군과 소속 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관련정보 제공) 군수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1조(정책결정과정 및 군정 참여) ①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군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 참여)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 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군수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여성인적자원 개발) ①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복지 증진) 군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의 지원사업
2.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예방·보호 사업
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보호 사업
4. 노인 여성 및 장애인 여성의 복지 증진 사업
5. 모성보호 및 출산장려 사업

제16조(결혼이주여성 지원) 군수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한국 사회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련시책 추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군수는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내 성희롱 사례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관련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고령군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유공자 포상)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정책위원회

제21조(설치)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정책 목표 및 방침
2. 여성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여성교육·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노인 여성과 장애인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생활지원실장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3.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4.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5. 의료·교육기관, 여성폭력·상담관련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제2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령군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3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3.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4.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5.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6조(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12.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7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실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은 2017.12.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